

圖書館法 改正運動의 經過와 그 問題點에 관한 小考

하 명 희

I. 緒 論

1. 연구목적

現行圖書館法이 1963년에 制定, 公布되어 이 法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圖書館界는 많은 發展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1970年代부터 우리의 社會가 급격히 발전적으로 변모되었고, 또한 圖書館의 機能과 役割도 크게 달라지게 되어, 현행 도서관법에 의하여 圖書館制度를 운영하는 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자료를 蒐集, 保存하는 保管場所로서의 圖書館概念에서, 國家發展의 原動力이 되는 情報를 提供하여 주는 기관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이와같이 중요한 圖書館의 社會的 機能을 외면한 채 圖書館法은 制定된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현실에 맞게 改正된 일이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現行 圖書館法을 살펴 보면, 圖書館育成은 國家가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微溫의이며, 勸告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리고 圖書館機能의 活性化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施策이 결여되어 있고, 全國圖書館의 組織體系가 整備되어 있지 않아서 圖書館機能의 效率을 높힐수 없게 되어있다.¹⁾ 圖書館界의 發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圖書館法이 이와같이 오히려 도서관현실에 뒤떨어진 內容으로 되어있어서, 圖書館法改正의 필요성이 오래전 부터 주장되어왔다. 그러나 아직도 圖書館法改正이라는 圖書館界의 오랜 念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本考에서는 現行 圖書館法이 制定되기까지의 經過過程을 調査하는 동시에, 現行 圖書館法이 가지고 있는 問題點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한 立法的 조치로서 여러차례 제안된 도서관법 개정운동의 경과 및 개정안의 內容을 順次的으로 조사하여, 改正案이 입법화되지 못한 원인 등을 分析하였다. 이러한 分析을 통하여, 앞으로 도서관법 改正運動의 方向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하는 것이 研究目的이다.

1)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改正案”, 도협월보., 제 10 권 제 10 호, 1979, p. 6.

2. 研究方法

本 研究의 方法은 圖書館法에 관련된 國內의 各種 文獻을 蒐集·檢討하여, 現行 도서관 法의 問題點과 改正의 필요성 등 現行 圖書館法의 전반적인 問題를 다루었다. 그리고 法 制定過程 法改正의 실패원인, 개정안의 變化 등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개정을 위한 專擔機 關인 韓國圖書館協會를 직접 방문하여, 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입수한 資料를 근거로 研究하였다.

3. 研究의 限界

圖書館法에 관계되는 國內의 各種 문헌과 韓國圖書館協會의 기록물류 등을 研究資料로 利用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에 관계되는 법규로는 圖書館法,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法施行規則이 있다. 도서관법시행령은 1967年과 1969年, 2차례에 걸쳐 일부 改正이 되었고, 도서관법시행규칙 또한 1969年과 1975年에 일부 改正이 되었다. 그러나 本考에서는 現行 圖書館法에만 국한하였으므로, 도서관법시행령, 도서관법시행규칙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고 있다.

II. 現行 도서관법 制定의 背景과 問題點

1. 制定過程

圖書館法은 도서관의 設置와 運營 및 圖書館職員의 신분보장 등을 規定하여, 궁극적으로 國民들에게 효율적인 利用을 奉仕하기 위한 法이다. 즉 圖書館法은 圖書館를 통해서 國民에게 文化的으로 奉仕하는 동시에, 圖書館의 發展에 대한 基本的 條件을 設定하는 것이다.²⁾

이러한 견지에서 韓國圖書館界는 도서관법 制定의 絶실한 必要性을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法制定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韓國圖書館協會의 創立을 契機로 圖書館法制定에 대한 活動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1955年 4月 16日 韓國圖書館協會 創立總會에서 圖書館法의 必要性이 강조되어, 圖書館法制定에 대한 建議를 하기로 可決하였다. 총회익일인 4月 17日에 開催된 韓國圖書館協會 理事會에서, 嚴大燮氏와 朴熙水氏에게 圖書館法 草案을 作成하도록 委任하였다.

그리고 5月 1日에는 圖書館法制定에 대한 建議書를 文教部와 國會文教分科委員會에 提出하였고, 8月 6日 韓國圖書館協會 理事會에서는 그동안 嚴大燮, 朴熙水 兩氏가 作成한 法草案에 대해서 朗讀의 節次를 걸쳤다.

1956年 1月 7日 韓國圖書館協會 理事會에서 法草案의 檢討을 終結지었다. 당시 作成된 圖書館法草案은 全文 4章 13條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章 總則(目的, 圖書館의 定義, 圖書館의 사업)

2) 韓國圖書館協會 三十年史編纂委員會, 韓國圖書館協會三十年史, (서울, 한국도서협회, 1977) p. 110.

제 2 장 公立圖書館(特別市, 道, 市, 設置條例, 入館料, 設置機構基準, 專門技術職員의 資格, 국고보조)

제 3 장 私立圖書館(設置認可, 入館料)

제 4 장 其他(設置運營에 대한 文教部長官의 協力, 政府刊行物의 無償 提供)
부 칙³⁾

1955 年에 創立된 한국도서관협회는 1956 年부터 分科委員會 中心으로 사업을 展開하였다. 따라서 1957 年 5 月 8 日 金聖源, 金京一, 金石善, 朴熙永, 嚴大燮, 柳東烈, 李鐘文, 全水權 諸氏로 이루어진 法制委員會가 구성되어 1956 年에 作成된 법초안을 再檢討하는 동시에, 새로운 草案作成에 着手하였다. 이 法制委員會는 1957 年 5 月 14 日부터 9 月 11 日 까지 9 次에 걸쳐 새로운 法草案을 作成하였다. 作成 完了된 草案은 同年 10 月 11 日 諮問委員인 朴一慶氏의 諮問을 받은 후, 12 月 10 日 韓國圖書館協會 理事會에서 最終檢討를 거쳐 全文 6 章 35 조로된 법초안을 採擇하였다. 이 案은 1956 年 초안에 비해 總則의 조문을 새로이 강화하였고, 國立圖書館의 章을 신설하였다.

제 1 장 總 則(제 1 조~제 8 조)

제 2 장 國立圖書館(제 9 조~제 12 조)

제 3 장 公立圖書館(제 13 조~제 19 조)

제 4 장 私立圖書館(제 20 조~제 23 조)

제 5 장 學校圖書館(제 24 조~제 30 조)

제 6 장 圖書館協會(제 31 조~제 33 조)

附 則 (제 34 조~제 35 조)

도서관법 制定을 위하여 전담위원회로서 활동하던 法制委員會는, 1958 年 行政分科委員會로 變更되었다. 行政分科委員會는 1958 年 3 月 3 日 회의를 開催하여 도서관법의 修正案作成을 의결하였으며, 6 月 30 日 圖書館法推進을 결의하여, 過去의 초안 등을 토대로 法案起草에 착수하였다.

7 月 11 日 제 4 차 韓國圖書館協會 理事會에서 同초안의 審議에 들어가 公共, 大學, 學校를 망라한 綜合的인 도서관법을 제정토록 可決한 후, 圖書館法推進委員會를 選出하였다. 9 月 5 日에는 도서관법추진위원회에서 綜合的인 圖書館法案起草를 完成하여, 9 月 9 日 제 5 차 한국도서관협회 이사회에서 全文 4 章 30 條로 된 圖書館法案을 審議 可決하였다.

제 1 장 總 則(제 1 조~제 8 조)

제 2 장 公共圖書館(제 9 조~제 18 조)

제 3 장 學校圖書館(제 19 조~제 25 조)

제 4 장 圖書館協會(제 26 조~제 28 조)

附 則(제 29 조~제 30 조)

1958 年 9 月 19 日 圖書館法推進委員會가 召集되었고, 9 月 23 日에는 國會文教分科委員長과 圖書館協會側이 會合하여, 圖書館法에 대해 意見を 交換하였다. 11 月 1 日에는 圖書

3) 韓國圖書館協會, “公開討議”, 도협월보, 제 3 권 제 14 호, 1962, p. 105.

館法推進委員會가 文敎部長官과 民議院議長에게 圖書館法 制定을 請願하므로써, 1958年 11月 20日에는 當時 國會의 閔壯植議員이 全文 6章 35條로된 圖書館(圖書館協會草案을 骨字로 하였으나, 一部 變更된 것임) 法案을 正式로 國會에 提案하였다.

제 1 장 總 則(目的, 도서관의 목적,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의 사업, 사서 및 부사서, 사서 및 부사서의 강습, 문교부장관의 지도감독, 공보용출판물)

제 2 장 國立圖書館(목적, 관장, 자문, 입관료)

제 3 장 公共圖書館(설치 의무, 설치보고직원, 경비, 국고보조, 보조금교부의 수속절차, 자문, 입관료)

제 4 장 私立圖書館(설립,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국고보조, 입관료)

제 5 장 學校圖書館(목적, 설치기준, 설치보고, 직원, 국고보조, 일반인에 대한 공개, 입관료)

제 6 장 圖書館協會(설치, 정관의 승인 국고보조)

附 則(공포일, 경과배치)

그러나 이 法案은 1958年 12月 國회의 2·5 政治波動으로, 다른 법률안과 함께 國會에 上정까지 되었다가 廢棄되고 말았다.

1959年은 도서관법 制定을 위해 再活動에 突入한 해였다. 1月 26日 한국도서관협회 총회에서 圖書館法通過促進을 政府에 建議하기로 可決하였다. 한편, 2月 27日 한국도서관협회내에 行政委員과 事務局長, 延世大學校圖書館學會 추천으로 圖書館法審議會를 구성하여 도서관법안 작성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圖書館法審議會는 1958年 7月 11日 한국도서관협회 이사회에서 심의 가결한 韓國圖書館協會案과 1958年 11月 20日 閔壯植 議員이 國會에 제출했던 法案과, 연세대학교 도서관학회에서 기초하였던 초안을 참고로 하여, 1959年 2月 27일부터 5月 4일까지 圖書館法審議會를 가졌다. 이 심의회에서 작성된 法案은 同年 5月 9日 한국도서관협회 이사회에서 檢討된 후, 全文 4章 35條의 法案이 承認되었다.

제 1 장 總 則(제 1 조~제 8 조)

제 2 장 公共圖書館(제 9 조~제 22 조)

제 3 장 學校圖書館(제 23 조~제 28 조)

제 4 장 기 타(제 29 조~제 30 조)

附 則(제 31 조~제 35 조)

國會 사정으로 廢棄의 운명에 놓여있던 圖書館法制定의 문제는 轉禍爲福되어, 그후 많은 社會的 輿論과 行政政府 當局의 協助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1959年 5月 12日에는 同年 5月 9日 한국도서관협회 이사회에서 承認된 법안을 文敎부와 國會에 立法資料로 提出하였다. 6月 2日에는 韓國日報社 主權로 도서관법에 대한 座談會를 가졌다. 6月 9日 한국도서관협회 이사회에서 圖書館法制定 推進方案을 檢討하여, 10月 23日에는 도서관법제정에 대해서 各民議員에게 書面으로 理解와 協助를 요청했다.

1960年 1月 25日 한국도서관협회 총회에서 도서관법제정 촉진에 대해서, 總會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國會議長과 文敎部長官에게 建議하기로 하였고, 도서관법제정을 촉진하는

全國圖書館大會를 1960년 4월에開催하자는 動議가 可決되었다. 그러나 1960년도의 4·19 사태는 立法部의 기능을 마비시켜, 도서관의 추진도 中斷되었다.⁴⁾

군사혁명이 있었던 직후인 1961년 6월 10일 國家再建最高會議에 대하여 도서관법의 制定·公布를 건의하였고, 6월 28일 國家再建最高會議 企劃委員會에서 도서관법안의 討議를 시작하였다. 7월 11일에는 文敎部長官에게 도서관법의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國家再建最高會議 社會文化委員會는 8월 초순에 도서관법의 심의를 일단 마무리 짓고 文敎部로 送付하였다. 왜냐하면, 도서관법은 敎育과 관계되는 法이라고 해서, 政府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文敎部로 이송된 것이다.⁵⁾

1961년 11월 文敎部는 各種圖書館의 지휘능력을 國立中央圖書館(당시의 政府機構上)의 權限下에 두고, 司書資格證은 國立中央圖書館長이 授與한다는 등 別途의 도서관법을 성안하였다. 이에 대해 韓國圖書館協會는 그 不當性を 指摘하고, 11월 24일 開催되었던 圖書館協會 理事會에서 是正을 促求하기로 決議하고, 建議書를 作成하여 文敎部에 提示하였다.

1962년 6월 14일과 7월 2일에는 圖書館法 關係로 文敎部·法制處·韓國圖書館協會의 三名 合同會를 가졌다. 1963년 8월 12일 도서관법안이 次官會議에서 上程되었고, 8월 29일 全文 29條로된 도서관법안이 可決通過되어, 9월 3일 閣議를 거쳐 國家再建最高會議에 上程되었다.

1963년 10월 5일 도서관법은 韓國圖書館協會 創立總會에서 법제정의 필요성이 強調된 후, 8년만에 國家再建最高會議에서 通過되어 확정되었다. 즉 全文 4章 29條로 되어있는 現행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法律 第1424號로 公布되었다.⁶⁾ 現행 도서관법의 內容을 살포보면 아래와 같다.

제 1 장 總 則(제 1 조~제 13 조)

제 2 장 公共圖書館(제 14 조~제 24 조)

제 1 절 總 칙

제 2 절 국립중앙도서관

제 3 절 공립의 공공도서관

제 4 절 사립의 공공도서관

제 3 장 學校圖書館(제 25 조~제 27 조)

제 4 장 罰 則(제 28 조~제 29 조)

附 則⁷⁾

2. 現行 圖書館法の 問題點과 改正의 必要性

現行 圖書館法이 1963년 10월 28일 制定 公布된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現실정

4) 韓國圖書館協會 三十年史編纂委員會, 前掲書, pp. 110~121.

5) 韓國圖書館協會, 前掲書, p. 107

6) 韓國圖書館協會 三十年史編纂委員會, 前掲書, pp. 121~122.

7) 圖書館法.

에 맞게 改正된 일이 없다.

10년이면 江山도 변한다고 한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社會經濟는 눈부실만큼 發展하였다. 圖書館界도 70年代 以後에 많은 發展을 하였다. 그러나 圖書館法만은 처음 制定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이제 제5공화국이 出汎하여 새로운 福祉國家 建設에 힘쓰며, 祖國의 近代化作業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各種 文獻情報를 제공해주는 圖書館의 역할이야 말로 重大하지 않을 수 없다.

人類文化가 圖書에 의해서 계승되었다면 圖書館은 文化를 전승시키는 道具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⁸⁾ 이렇게 圖書館이 중요한 使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圖書館은 圖書館法 자체가 지닌 허다한 問題點때문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現行 圖書館法을 適用하여 그가 지니고 있는 矛盾과 不實性이 時間의 흐름에 따라 露骨化하여 圖書館發展의 阻害要因이 되는점이 적지 않게 나타나 改正의 불가피성이 오래전부터 提起되어 왔다.⁹⁾

圖書館法改正의 필요성은 圖書館界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言論機關 出版界 등에서도 강조되고 있어 各級 報道機關에서 特別企劃기사로 크게 다루어졌다.¹⁰⁾ 그밖에 各新聞, 방송, TV등에서 여러차례 圖書館法 改正問題와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을 비롯한 전체 도서관 문제가 크게 다루어졌다.¹¹⁾ 그리고 1981年 1月 韓國圖書館協會에서 紙上公聽會를 열어 圖書館法 改正推進에 따른 意見書를 韓國圖書館協會會員과 大學에서 圖書館學을 담당하는 교수님을 대상으로 제출하여, 意見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現행 도서관법이 가지고 있는 問題點에 대하여 檢討하기로 하자.

A. 專門職

圖書館의 基本 구성요소란 사람, 施設, 資料이다. 여기에서 生命이 通하는 것은 圖書館職員이다. 圖書館 專門職員은 도서관의 機能을 발휘하는 職務에 從事하는 것이다. 즉 도서관직원은 그 기관에서 情報傳達를 媒介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媒介의 도구의 作成 또는 직접 몸을 움직여서 利用者와 資料를 媒介하는데 있다.¹²⁾ 따라서 司書라는 專門職은 一般職과 구별되는 技術과 知識을 필요로 하는 特殊專門職으로서 그에 따른 특별한 敎育과 訓練을 쌓아야만 그 본연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¹³⁾

이런 點을 감안하여 現행 도서관법에서 司書職에 대한 規定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6 조(사서직원의 配置) ①항에서 司書職員의 配置를 의무화했고, ②항에서 司書職員

8) 李丙熙, 『國家發展道具로서의 圖書館의 使命』(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7) p. 27.

9) 李澤洙, "圖書館法 改正方向에 關한 小考", 『도서관』 제 35 권 제 8 호 1980, p. 14.

10) "書庫에 묻혀온 圖書館法 18年", 『朝鮮日報』, 1981年 10月 8日, 7面. "成長의 그늘 公共 도서관", 『東亞日報』 1981年 10月 13日, 9面. "있고도 없는 法의 盲點시대 圖書館法 改正, 整備 추진의 언저리", 『독서신문』, 1971年 3月 14日, 4·5면.

11)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改正문제 言論에서 크게 다뤄" 『圖書館研究』, 제 22 권 제 5 호, 1981, p. 71.

12) 李珪誌,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 『국회도서관보』, 제 12 권 제 4 호, 1965, p. 19.

13) 金基泰, "韓國圖書館法의 問題點과 改正方案", 『도서관』, 제 33 권 제 9 호, 1978年, p. 17.

司書教師의 資格과 養成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 圖書館法施行令 제 4 조(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에서 正司書와 準司書를 구분하고 있으며, 圖書館法施行令 附則에 正司書와 準司書의 資格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文敎部長官에게 사서자격증 교부신청에 대한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왔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 26 조에 각종 학교에 둘 司書職員, 司書教師 또는 司書職務를 담당할 教師등 그 배치기준을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行 圖書館法施行令 제 4 조 ②항, ③항에 正司書와 準司書를 구별하고 있는데 비해 승진, 보수 등에 대한 規定이 없으며, 또 國家公務員法이나 地方公務員法에 관련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國·公立의 도서관일 경우 으레히 公務員任用令에 의해서 司書職員을 채용하며, 圖書館學에 관한 몇과목 시험만 치르면 任用이 되고있다. 또 地方公務員法에는 사서직종이 없어서 오히려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이 임용시험에 불리한 형편이다.¹⁴⁾

한편으로 司書教師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教師라는 개념에 있다. 그리고 司書教師 資格證의 인정은 1963年 12月 5日(法律 第 1463號)개정 공포된 教育公務員法에 新設함으로써 일반교사의 원칙하에서 資格基準을 法制化하였다. 그러나 司書教師의 자격기준을 보면 司書教師는 양호교사등과 같이 特殊教師의 계열에 속하므로,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國民學校와 中等學校의 사서교사 사이의 자격구별이 없다는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¹⁵⁾

B. 圖書館의 소속청 및 직제

어느 機關이든 그 기관의 機能을 효과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職制가 確立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의 효율적인 運營을 위해 도서관의 職制가 확립되어야 한다.

도서관법 제 9 조(감독청)에 文敎部 및 市·道教育委員會가 私立公共圖書館의 감독청이 되어 있으나, 地方의 市·郡 圖書館이 教育委員會 소관하에 있는 곳도 있고 市·郡 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곳도 있다. 즉, 도서관의 소속청이 一元化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체계적 통일적인 公共圖書館 行政을 도모할 수가 없다.¹⁶⁾

公共圖書館의 소속청 問題와 함께 大學圖書館의 職制確立 역시 문제되고 있다.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대학조직속에 수서과의 도서수입, 整理課의 분류·목록, 閱覽館의 대출, 참고와의 特殊資料의 교육 등 중요한 部署로 형성되어 있다. 私立大學敎의 圖書館職制는 개개 도서관이 가지는 性格에 따라 어느 정도 確立되어 있으나, 國立大學校 圖書館의 경우는 圖書館의 제일 중요한 수서과·정리과에 專門職司書가 아닌 行政事務官이 주무과장을 맡고 있으며, 열람과에는 司書職이 맡고있다.¹⁷⁾ 이러한 點으로 미루어, 대학도서관의 직제가 올바르게 확립되지 않고 있다.

14) 이철규, "도서관법에 대한 고찰: 법 개정을 중심으로" 도서관, 제 26 권 제 7 호, 1969年, p. 20.

15) 金基泰, 前掲書, pp. 18~19.

16) 이철규, 前掲書, p. 21.

17) 金基泰, 前掲書, p. 23.

C. 圖書館 豫算 및 設置

도서관의 發展과 育成的 效율적인 運營을 위하여 豫算確保策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도서관법 제 7 조(國家등에 대한 公共圖書館設置의 勸獎)에서 너무나 消極的인 내용, 즉 예산의 범위내에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公共圖書館의 설치에 노력해야 한다는 勸獎規定으로서는 도서관에 대한 認識이 부족한 현실정하에서, 어려운 豫算을 할애할 것인지 懷疑的이다. 도서관법 제 5 조(도서관시설)에는 各種 施設의 種類와 환경에 대한 公共圖書館의 基準이 規定되어 있으나, 圖書館法施行令 제 2 조 別表에는 圖書館施設로서 참고열람실, 목록실, 전기실 등이 빠져있다.¹⁸⁾ 도서관법 제 18 조(公立의 公共圖書館 設置) 제 19 조(보조) 제 20 조(私立의 公共圖書館) 제 21 조(보조) 등에서 圖書館設置에 소요할 예산면의 규정이 하나같이 國家가 조급의 豫算이라든 지출해야 하는 義務的인 規定은 하나도 없고 그저 “~할 수 있다”는 任意規程 뿐이었다. 도서관법 제 25 조(學校圖書館의 設置)에서 學校圖書館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다고 義務規程되어 있으나, 그 기준령은 형식상으로 마련하여 놓고 그 基準에 미달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⁹⁾

D. 圖書館資料

圖書館이 있어도 자료가 없으면, 자료센터로서의 도서관 基本機能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圖書館의 資料 또한 도서관의 중요한 構成要素이다.

圖書館의 資料에 대한 規定을 現行 圖書館法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2 조(定義)에서 圖書館資料에 圖書이외의 非圖書資料를 포함시켜 規定하고 있으며 제 12 조(도서관 자료의 提供과 納本) 제 15 조(公共圖書館의 機能면에서 資料에 대한 언급) 제 17 조(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면에서 資料에 대한 언급)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圖書館法施行令 제 2 조(도서관 시설기준)에 의한 別表 “公共圖書館基準”속에 圖書館 資料에 대한 表가 제시되어 있다.

위의 도서관법·도서관법시행령을 통해보면 圖書館 資料에 대한 定義規定에서 圖書뿐만 아니라, 도서관이외의 資料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圖書館法 여타조문에서는 圖書 以外의 資料에 대한 法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初·中高等學校 도서관 자료에 대한 規定이 現행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해방후 특히 6·25 이래 雨後竹筍格으로 늘어난 우리나라 大學들이 “대학설치 기준령”에 의해 圖書館藏書를 그 質이나 內容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치 않고 다만 冊數만을 고려하고 있다.²⁰⁾

18) 上揭書, p. 23.

19) 이철규, 前揭書, p. 21.

20) 上揭書, p. 22.

III. 圖書館法 改正運動의 經過

1. 改正案의 內容

현행 도서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의 問題點들을 현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圖書館法改正案이 韓國圖書館協會를 中心으로 하여 여러차례 作成되어왔다.

이 改正案中 기록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4회에 걸친 改正案 內容의 變化를 살펴 보고자 한다.

제 1次案(1976年)은 國立中央圖書館, 大學圖書館, 特殊圖書館을 새로운 章으로 신설하여 그 機能을 강화하였다. 제 2차안(1979年)은 1차개정안을 토대로 하여, 圖書의 資格과 養成에 대한 規定과 圖書館政策을 審議할 “圖書館發展委員會” 설치규정 및 專門圖書館에 대한 규정의 변화가 있었다. 제 3차안(1981年)에서는 현행도서관법과 제 1·2차안을 근거로 하여, 補充削除 形式을 취하여 자료의 納本制度和 國立中央圖書館의 역할, 그리고 圖書館間의 相互協力을 도모하는 圖書館協力網의 機能을 강화시켜 새로운 案으로 작성되었다. 제 4차 개정안(1983年)은 國會定期會議에 提案할 案으로써 지금까지 제안되어 온 제 1·2·3차 개정안을 綜合한 改正案이다.

A. 第1次改正案(1976年)

現行圖書館法이 가진 問題點들을 補充하여 作成된 改正案草案의 改正骨字는 다음과 같다. ①國立中央圖書館을 國內外에 한국도서관을 代表하는, 館種을 초월한 超然한 姿勢確立과 機能이 확대강화된 國家의 센터도서관으로서의 面貌를 구현한다. ②圖書館 施設 및 運營에 대한 基準의 설정으로 도서관의 平準化한 發展策을 강구한다. ③各種 圖書館 運營에 필요한 財政確保策을 강구한다. ④국가문헌의 納入條項을 補充하여 圖書, 雜誌 및 新聞등 일반적인 出版物外에 비도서자료인 視聽覺資料 등도 納入하도록 하여, 國家貴重文化財의 망라적 蒐集과 保存策을 강구한다. ⑤도서관 振興에 대한 중요한 施策의 審議機構 設置策을 마련한다. ⑥利用者의 低邊擴大를 도모한다. 즉 自動車文庫, 巡回文庫, 職場文庫活動, 圖書館相互協力, 入館料의 징수철폐등을 통하여 도서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⑦地方센터 圖書館制度의 確立으로 圖書館協力組織을 체계화할 수 있게 한다. ⑧大學 및 學校教育을 바람직하게 發展시키기 위하여, 大學圖書館과 學校圖書館의 機能擴大를 도모한다. ⑨情報社會에 대처하기 위한 特殊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을 적극 장려한다.²¹⁾

그러면 全文 7章 38條의 1차안을 現行 圖書館法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제1장 總 則

도서관의 種類를 設立者·設立目的에 따라 區分하고 있는 點에서 同一하나, 設立目的의 구분에서 大學圖書館을 新設함으로써 개개도서관의 機能을 더욱 더 具體적이고 現實의으로 명시하였다.

國務總理 所屬下에 圖書館政策에 필요한 審議機構로 “圖書館發展委員會”설치의 규정을

21)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改正案,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6) p. 3.

신설하였다.

그리고 종래 納本資料로서 圖書, 定期刊行物등 圖書類에 限定한 것을, 非圖書資料, 視聽覺資料등도 納入할 수 있도록 擴大하여 규정하였다.

제 2 장 國立中央圖書館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國立中央圖書館을 公共圖書館의 章에서 함께 취급하였다. 改正案은 이를 獨立시켜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종래의 文教部長官所屬下에 있던 것을 國務總理所屬下에 두도록 하였다.

제 3 장 公共圖書館

現行도서관법 제 2 장을 改正案에서는 제 3 장으로 옮겨, 第 1 節 總則·第 2 節 公立의 도서관·第 3 節 私立의 도서관으로 區分하여, 各機能과 活動을 구체화 하였다. 제 7 조(國家등에 대한 公共圖書館設置의 勸獎)의 規定을 “國家등에 대한 公共圖書館設置의 義務”로 바꾸어, 종래의 公共圖書館設置의 勸獎規定을 義務規定으로 고침으로써, 福祉國家를 구현하는 積極的인 文化政策을 遂行하도록 하였다.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圖書館入館料를 받도록 規定되어 있는 것을, 改正案에서는 入館料를 받을 수 없도록 規定함으로써 그간의 後進의 圖書館奉仕에서 發展的인 도서관 본래의 奉仕로 전환시켰다.

市·道單位 地域內에 있는 公立의 公共圖書館中에서 1 館을 地方中央圖書館으로 指定하여, 지역의 各種 圖書館을 指導連結하고 統一的 協力體制를 정비토록 하는 條項을 新設하였다. 그리고 公·私立의 公共圖書館에 대한 補助規定에서는 기타 경비의 一部도 補助할 수 있도록 改正함으로써, 公共圖書館의 育成을 적극도모할 수 있는 財政補助의 範圍를 확대하였다.

제 4 장 大學圖書館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大學圖書館에 대한 사항을 學校圖書館에 포함시켜 取扱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章을 독립시켜 대학도서관에 대한 設置, 職員, 一般利用에의 提供들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 5 장 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 育成을 위한 國家의 任務를 規定한 조항을 新設하였다. 그리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施設 및 運營의 기준에 달할 수 있도록 학교에 補助金を 지급하여, 學校圖書館의 平準化한 發展을 基할 수 있도록 조항을 新設하였다.

제 6 장 特殊圖書館

현행 도서관법에서 特殊圖書館이 適用排除되어 있는 것을, 改正案에서는 이것을 개정하여 새로이 章을 신설하여 特殊圖書館의 設置運營을 法으로 뒷받침하였다.

제 7 장 罰則

罰金과 過怠料에 대한 規定이 그 기준을 現實化하여 改正되었다.

B. 제 2 차 개정안(1979 年)

제 1 차 개정안에 이어, 全文 9 章 54 條로 作成된 2 차안은 全面改正의 형식을 가급적 피하고, 현행법 제 1 차 개정안의 테두리 안에서 補完削除形式을 취하였다.

제 2 차 개정안의 擘字는 다음과 같다. ①도서관에 대한 定義를 현실적인 內容으로 補完

함으로써 圖書館의 概念을 새로이 定立하였다. ②圖書館育成에 대한 國家次元의 施策을 마련할 審議機構을 둔다. ③모든 資料와 國家의 重要文化財의 網羅의 蒐集과 保存策으로 國家文獻의 納本條項을 보완하였다. ④圖書館奉仕의 極大化를 위하여 圖書館 專門職인 司書의 資格基準을 강화한다. ⑤全國 各種圖書館間의 相互協力을 도모하는 制度를 마련한다. ⑥情報産業社會에 대처하기 위한 專門圖書館의 設置運營을 장려한다. ⑦特殊環境속에 있는 者와 身體障礙者들을 위한 特殊圖書館의 設置運營을 적극 장려한다.²²⁾

제 2 차 개정안을 現行 圖書館法과 제 1 차안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 總 則

圖書館種類를 설립자·설립목적에 따라 區分하지 않고, 國立圖書館·公共圖書館·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特殊圖書館으로 구분하였다. 前案(1차 개정안)에 비해 專門圖書館이 새로 규정되었다. 司書의 資格과 養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서관의 專門性을 考慮하는 한편 圖書館奉仕의 極大化를 圖謀하도록 專門職司書의 資質을 上向調整하였다. 圖書館 專門職團體인 韓國圖書館協會의 機能을 확대하여 그 活動을 강화토록 하였다.

제 2 장 國立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 運營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國立中央圖書館運營委員會”를 新設하였다. 그리고 國立中央圖書館長의 職위를 政府委員級으로 하였고, 專門職副館長을 1級公務員으로서 補하도록 함으로써, 國家代表圖書館의 面貌을 갖추도록 하였다.

제 3 장 公共圖書館

公共圖書館의 효율적인 運營을 위하여 圖書館運營委員會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공도서관의 施設·資料·職員·經費 및 奉仕活動과 기타 필요한 基準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강화하였다.

제 4 장 大學圖書館

大學圖書館의 章을 獨立시켜 취급한 것은 제 1차 개정안과 同一하며, 대학도서관의 職員에 대한 條項을 강화하였다.

제 5 장 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 育成을 위한 國家 任務를 규정한 條項과 補助에 대한 條項을 신설한 것은 제 1차 개정안과 同一하며, 학교도서관의 機能을 더욱 더 강화하였다.

제 6 장 專門圖書館

현행 도서관법 제 1차 개정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專門圖書館에 대한 규정이 新設되었다. 政府機關, 公共團體, 學校團體, 産業體등의 構成員들이 調査와 學術研究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情報 産業社會에 대처할 수 있도록 專門圖書館의 設值를 적극 勸獎하기 위하여 새로 규정되었다.

제 7 장 特殊圖書館

特殊圖書館을 새로운 章으로 독립시켜 설치 運營을 法으로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은 제 1

22)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改正案”, 도협월보, 제 20 권 제 10 호, 1979, p. 6.

차 改正案과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특수환경에 있는 자와 신체장애자를 위한 도서관의 設置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이 章을 신설하였다.

제 8 장 圖書館協力網

圖書館奉仕業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全國 各種 圖書館의 相互協力을 圖謀하는 組織體系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章을 新設하고 제 1 절 총칙, 제 2 절 중앙관, 제 3 절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나누어 각각 내용을 具體的으로 규정하였다.

C. 제 3 차 개정안(1981年)

제 3 차안은 韓國圖書館協會가 작성한 改正案을 會員들로 부터 접수된 意見を 綜合한 資料를 中心으로 각 조항별로 축조 심의하여 改正案을 확정시킨 것이다.

제 3 차 개정안의 주요 骨字는 다음과 같다. ①도서관의 目的과 도서관 資料의 範圍를 現代的 意味의 도서관 機能에 맞추어 규정하였다. ②도서관 職員의 專門性과 資質上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司書職員의 資格 및 養成에 관한 規定을 新設하였다. ③公共圖書館이 地域社會의 필수적 社會教育機關 및 평생教育機關임을 고려하여, 現行公共圖書館設置의 권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는 한편 公共圖書館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④公共圖書館의 設立目的이 大衆의 社會教育 및 文化의 向上을 위한 기관임으로 入館料 징수규정을 삭제하였다. ⑤圖書館奉仕와 機能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圖書館協力網을 구성하였다.²³⁾

제 3 차 개정안 역시 現행 도서관법과 前案들의 改正 內容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 總 則

도서관법의 目的을 現代 우리 生活에 맞게 強化하였고, 圖書館 資料의 범위를 圖書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非圖書資料의 범위까지 넓혀서 규정하였다. 圖書館의 種類는 제 1 차 개정안과 同一하게 區分되었으나, 제 1·2 차 개정안에 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새로 구분되었다. 제 2 차 개정안에서 다루어진 專門圖書館에 대한 규정은 제 3 차 개정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圖書館發展委員會設置에 대한 규정의 신설은 제 1·2 차 개정안과 동일하다.

제 2 장 國立中央圖書館

國立中央圖書館役割의 중요성이 고려되어, 民族文化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그 機能의 강화와 國家代表圖書館의 개념을 확립시켜 규정하였다. 資料의 원형보존과 納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資料蒐集上의 特例規定을 新設하였다.

제 3 장 公共圖書館

現행법과 제 1·2 차 개정안에서 公共圖書館을 제 1 절 총칙, 제 2 절 공립의 공공도서관, 제 3 절 사립의 공공도서관으로 區分하던 것을 구분하지 않았고, 공공도서관이 公衆에게 奉仕함으로써 地域主民의 평생教育 및 文化發展에 이바지 하는 것을 위하여, 그 機能과 基準에 대한 規定을 強化하여 신설하였다.

23)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改正案 (서울, 한국도서관 협회, 1971) p. 3.

제 4 장 大學圖書館

大學教育의 目的達成을 위해 大學도서관의 機能에 대한 條項을 새로이 強化하였다.

제 5 장 學校圖書館

學校圖書館에 대한 규정은 제 1·2 차 개정안과 거의 同一하나, 讀書會, 鑑賞會, 展示會 등을 主催하는 학교도서관의 機能이 強化되었다.

제 6 장 特殊圖書館

제 2 차 개정안에서 언급된 專門圖書館의 設치운영 理由가 同一하며, 특수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 7 장 圖書館協力網

圖書館協力網에 대한 定義는 제 2 차 개정안과 同一하다. 그러나 제 2 차 개정안과 같이 제 1 절 총칙, 제 2 절 중앙관, 제 3 절 지역대표관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各 機能을 強化하였다.

D. 제 4 차 개정안(1983 年)

이 案은 現行 도서관법 제 1·2·3 차 개정안의 主要骨字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現실 情에 맞게 改正된 案으로써, 이번 가을 定期國會에 上程할 全文 8 章 40 條로 作成된 案이다.

이 개정안을 現行圖書館法과 여러차례의 改正案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 總 則

圖書館種類의 區分에 따른 기준은 제 3 차 개정안과 同一하게 규정되어 있다. 情報化社會에 따라 圖書館運營에 수준높은 專門性이 요청되어 司書職員의 資格 및 養成에 대한 規定은 제 2 차 개정안과 同一하며, 圖書館發展委員會設置에 관한 規定 또한 제 1·2·3 차 개정안과 同一하다.

제 2 장 國立中央圖書館

公共圖書館과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및 設置理由가 다르므로, 公共圖書館의 범주에서 國立中央圖書館을 별도의 章으로 독립시킨 것은 제 1·2·3 차 개정안과 同一하다. 명실상부한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내실을 기하고, 國際間의 情報交流를 위한 분담책임 기관으로 현대화하기 위하여, 그 기능을 強化시킨 것은 제 3 차 개정안과 同一하다. 그리고 國家文獻 및 國際資料의 蒐集·保存에 만전을 期하기 위한 資料蒐集上의 特例에 대한 規定의 新設이 제 3 차 개정안과 同一하다.

제 3 장 公共圖書館

공공도서관의 設치가 任意規定으로 되어 있는 것을 國民의 平生教育과 文化發展에 대한 헌법의 의지구현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의 設치를 義務화하여 規定하였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發展과 機能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圖書館運營委員會를 조직하는 規定은 제 2 차 개정안과 同一하다.

제 4 장 大學圖書館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發展과 더불어 機能과 本質 및 奉仕 대상자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學校圖書館에서 분리, 독립시켜 그 기능을 強化시켜 規定한 것은 제 1·2·3 차안과 同一

하다.

제 5 장 學校圖書館

제 3 차 개정안과 同一하나, 司書教師의 배치를 강제 규정하였다.

제 6 장 特殊圖書館은 제 3 차 개정안과 同一하다.

제 7 장 圖書館協力網

全國의 圖書館을 일사분란한 體系로 組織化함으로써, 全國圖書館 奉仕와 運營의 효율을 極大化 시키고, 도서관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活性化시키기 위한 도서관의 協力網에 대한 規定은 제 3 차 개정안과 同一하다.

2. 법개정의 失敗要因

圖書館法이 制定된 이후 國家社會는 급속한 發展과 變貌를 가져왔다. 즉 1970 年代初부터는 近代化의 촉진으로 말미암아, 社會 各分野에서 부단히 生産되는 다양한 文獻情報의 활용이 絶실히 必要하게 되었다.

圖書館이란 문헌정보를 蒐集·整理·保存하여, 이를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役割을 담당하는 情報管理 機關이다.²⁴⁾ 發展의 추세에 발맞추어 圖書館의 국가사회적 必要性이 날로 증대됨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社會的으로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에 관한 法律이 많은 問題點을 내포한 채, 그대로 전담되고 있어 社會와 制度와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現行 圖書館法을 補完한 새로운 改正案이 여러차례 文敎部에 提出되었다.

그러나 圖書館法 改正案이 아직까지 改正法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法改正이 現實化되지 못하고 있음에는 개정운동 자체에 명백한 原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몇차례의 圖書館法改正案이 作成되고서도, 圖書館法改正運動이 成功的으로 실현되지 못한 그 理由에 대하여 分析하기로 하겠다.

첫째, 圖書館改正을 위해 主導的인 역할을 하는 韓國圖書館協會에서 문제점은 찾을 수 있겠다. 물론 韓國圖書館協會에서 지금까지 12 年동안 圖書館法 改正運動을 계속 推進해오 고 있지만, 改正의 實效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법 개정을 위 한 改正運動이 行政分科委員會, 常務理事會등에 의하여 수경되어 왔다. 韓國圖書館協會內 에 도서관법 제정을 위해 강력하게 뒷받침 해줄 專擔部署가 設置되어 있지 않는 실정 이 다. 그리고 主務部署인 文敎部에 대해 圖書館法改正 충분한 설득이 부족한 微溫的인 業務를 하고 있다.

둘째, 圖書館界의 主務部署인 文敎部에 의해서도 問題點이 야기된다고 하겠다. 圖書館 法改正에 대한 文敎부의 적극적 정책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文敎部內에 圖書館 專擔部署 즉 局·課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圖書館法 改正問題를 그저 文敎部에 서 일괄하여 擔當하고 있다. 그리고 文敎부의 圖書館法改正에 대한 충분한 理解의 부족과

24)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改正案”, 도협월보 제 20 권 제 10 호, 1979, p. 5.

제한된 豫算으로 인하여, 部分的 改正을 하려고 하나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셋째 改正案으로 提出된 법안의 內容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點이다. 改正法案이 제안될 때마다 새로운 條文과 條項이 新設되어, 文教部에 제안된 여러차례의 改正案은 각기 다른 內容을 수록하고 있다. 圖書館法改正案을 國會에 제안할 權限을 지닌 文教部에서도, 개정안의 內容이 빈번히 變化됨으로써, 개정안의 內容에 대하여 충분히 理解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必要性을 느끼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개정의 實現을 더디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改正運動의 失敗要因으로 가장 중요한 意味를 지니는 것은, 國家的인 차원의 적극적인 圖書館政策이 樹立되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圖書館이란 많은 豫算이 소요되는 機關이다. 政府와 關係部署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필요한 豫算의 確保가 어려우므로, 도서관법을 改正할 수 없다는 消極的인 態度를 취함으로써 도서관법 改正運動이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다.

IV. 結 論

圖書館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서 生活하게 되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圖書館法改正의 必要性은 강조될 수 밖에 없다. 前述한 바와같이 圖書館法改正案이 4회에 걸쳐 提案되어 왔지만, 여러가지 原因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어 왔다.

오늘날의 圖書館制度를 합리적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도서관법의 改正은 필연적이므로, 圖書館法改正運動을 促進 現實化하기 위한 改善方案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①一般國民이 도서관에 대해 올바른 認識을 갖도록 啓蒙하여, 도서관법 개정의 必要性을 汎國民的으로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날 매스컴등에서 圖書館制度의 비합리적 현실을 문제시하고 先進外國의 도서관제도를 紹介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社會問題化하여 圖書館 發展의 기틀로써 도서관법개정을 現實化하기 위한 움직임을 전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도서관법 改正問題에 대하여 圖書館界가 고립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有關기관의 協助를 얻어 폭넓게 전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韓國圖書館協會內에 도서관법 개정을 위한 審議委員會를 구성하되, 有關기관에서 選出된 構成員을 포함하여 活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文教部の 圖書館擔當 主務處는 도서관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자체로 改正運動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④도서관 개정안을 作成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檢討끝에 가장 合理的인 案을 마련한 후 계속적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⑤圖書館 育成을 위한 資本確保가 도서관법 개정운동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社會의 有能한 資本家로 하여금 圖書館事業을 인식케하여 그들의 財政的支援을 얻어 政府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어 圖書館法 改正運動을 促進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 圖書館法改正이 現實化되도록 개정운동상 志向해야 할 方向에 대하여 檢討하여 보았다. 보다 합리적인 改正運動으로 圖書館法이 成功的으로 改正되어 圖書館 發展을 위한 礎石이 확립되기를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金基泰, “韓國圖書館法の 問題點과 改善方案”, 도서관, 제 33 권 제 9 호, 1978, pp. 15~26.
2. “書庫에 묻혀온 圖書館法 18年”, 朝鮮日報, 1981年 10月 8日字, 7面.
3. “成長의 그늘 公共圖書館” 東亞日報 1981年 10月 13日字, 9面.
4. 李喆珪,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 국회도서관보, 제 12 권 제 4 호, 1965, pp. 19~27.
5. 李喆珪, “圖書館法の 問題點: 公共圖書館 分野,” 도협월보, 제 14 권 제 1 호, 1973, pp. 7~11.
6. 이철규, “도서관법에 대한 고찰: 법제정을 중심으로”, 도서관, 제 26 권 제 7 호, 1969, pp. 19~26.
7. 李澤潯, “圖書館法 改正方向에 關한 小考”, 도서관, 제 35 권 제 8 호, 1980, pp. 14~18.
8. 李鴻球, “도서관법의 개정방향”, 도서관, 제 28 권 제 4 호, 1973. pp. 58~62.
9. 任鍾淳, “圖書館法 改正試案: 大學圖書館을 中心으로”, 도협월보, 제 10 권 제 9 호, 1969, pp. 1~5.
10. “있고도 없는 法の 盲點지대 圖書館法, 그 改正·整備 추진의 언저리”, 독서신문, 1971年 3月 14日字, 4~5面
11. 崔昌均, “圖書館法 改正案에 대한 管見: 大學圖書館 分野를 中心으로”, 도협월보, 제 17 권 제 10 호, 1976, pp. 11~14.
12. 崔在元, “現行 圖書館法の 문제점: 公共圖書館의 効率的 運營을 期待하며”, 도협월보, 제 19 권 제 4 호, 1978, pp. 2~11.
13. 韓國圖書館協會, “公開計議”, 도협월보 제 3 권 제 4 호, 1962, pp. 105~113.
14.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改正案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6) pp. 1~16.
15.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改案”, 도협월보, 제 20 권 제 10 호, 1979, pp. 5~21.
16.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改正案”, 圖書館研究, 제 22 권 제 5 호, 1981, pp. 49~67.
17.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의 改正에 즈음하여”, 도협월보, 제 17 권 제 3 호, 1976, pp. 77~80.
18. 韓國圖書館協會三十年史編纂委員會, 韓國圖書館協會三十年史,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7) pp. 110~123.

책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힘